

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인간의 범죄행위가 고용관계, 재화용역 이용관계, 교육시설 이용관계와 관련이 없다면,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상담원으로서의 역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취할 태도에 대한 우려와 수사과정 속에서 2차, 3차로 자신의 성정체성이 계속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기서 동성 간 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인권침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다양한 사유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아웃팅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증거수집 자체를 염두내지 못한다. 상담원은 내담자의 피해와 심리상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내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안정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담자가 침착하게 증거를 채집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지를 보내는 법률인, 의료인들과 내담자가 연결이 되어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내담자가 다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백은 줄어들 것이다.

혐오(증오)범죄(hate crime)

한국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개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성지향에 의한 범죄는 얘기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성폭행까지 당한 사건을 상기시켜볼 때 범죄횟수와 무관하게 한국사회에서도 '성지향에 의한 증오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할 때 본의주도하게, 또는 피해자의 재산에 상해를 입힐 때 피해자

의 인종, 민족, 종교, 장애, 국적, 성별, 또는 성 지향을 이유로 선택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증오에 대한 공격이 단순히 상대가 속한 그룹(집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잔인성은 보통 범죄보다 더하며 무엇보다 특별히 원수지간이 아닌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 그 특징 또한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오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살인이더라도 형에 가중치가 붙는다.¹³⁾ 서구와 미주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광복할만하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오범죄의 희생자 집단으로 랭크되어 있다. 미국은 1998년 10월 Matthew Shepard사건¹⁴⁾을 계기로 성소수자들의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연방수사국(FBI)의 조사¹⁵⁾에 의하면 여전히 인종, 종교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25%), 흑인(17%), 무슬림(11%)에 이어 남녀동성애자(9%)들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¹⁶⁾ 아시아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는 일본의 예¹⁷⁾를 들겠다. 2000년 동경 내 유메노시마공원에서 33세의 한 남성이 소년 3명에게 구타당해 금품을 갈취당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소년들은 재판에서 '호모수호자'라는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그런 일을 자주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은 단순금품갈취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일본단체들에게 여전히 [약자를 노리는 비굴한 범죄]

13) 현행법에 의거해 "A급 중범죄는 최고 20년형, B급 중범죄는 최고 10년형, 그리고 C급 중범죄는 최고 5년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효된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하면, "A급은 최고 종신형, B급은 최고 20년형, 그리고 C급은 최고 10년형"으로 형량이 2배로 늘어나거나 가중된다.

14) 98년 10월7일 와이오밍주에서 21세의 동성애자 Matthew는 자신도 게이라며 유인한 두 명의 청년에 의해 끌려가, 린치를 당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얼굴 목에 10여군데 찢어졌으며, 18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가해자 2명은 증오살인'의 죄목으로 사형까지 당할 뻔 했지만, 부모의 감형 청원으로 종신형으로 복역중이다. 당시 Matthew의 부모가 증오범죄를 막자는 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된 평화집회에 뉴욕경찰들이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위가 끝난 후 70여건의 공식 고발이 접수되었는데, 그 이유로 물리적 학대와 혐오적인 모욕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사면위원회 자료 참고)

15) 미연방수사국(FBI)의 통계에 의하면, 성적지향에 의한 증오범죄가 1996년(12%) 1997년(14%) 1999년(16.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6) 캐나다는 1969년 5월 동성애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1999년 퀘벡주를 시작으로 오타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리고 2004년 6월 노바스코샤주에 이르기까지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나라이다. 2001년에는 '프라이드 비전'이라는 동성애 전문 채널이 생겼고, 2003년 초에는 캐나다성공회 한 교구에서 게이성직자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17) 본 사례의 경우 2004년 1월에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일본게이활동가에게서 들은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호모포비아 사건 중 최악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2004년 6월 대통령 주재 각료회의를 열어 동성애 혐오불법화 법안¹⁸⁾을 통과시켰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진출(드러내기 내지 활동)이 많아지고 권리가 신장될 수록 사람들 의식속에 내재되어 있는 '비정상, 변태, 정신질환자 등'의 혐오와 두려움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사례5, 동성애자인권연대 전화 상담사례>

남산 인근에서 32세의 남성 C씨가 정체모를 사람 2명에 의해 각목으로 구타당한 사건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숙자로 밝히고, "우리들이 호모들을 잡아서 경찰에게 많이 넘겼다. 집이 어디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 동성연애 계속할꺼냐라는 폭언으로 내담자를 협박했음.

그렇다면 한국의 성소수자들도 충분히 (아직 성소수자가 증오범죄의 희생자로 얘기 되어진 사례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증오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교육의 실시를 통해 혐오범죄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hate crime law(혐오범죄 가중 처벌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개개인들의 커밍아웃에 대한 자부심이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Tip. 증오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증오범죄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는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119나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도록 한다.
- 경찰에게 범죄 신고를 한다.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 경찰서에 당신이 편견에 따른 혐오범죄의 피해자임을 설명하고 신고한다.

18) 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차별, 증오, 폭력 등을 선동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증오범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서류화 한다. 상세한 기록은 혐오범죄자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범죄 증거는 사진을 찍어두고, 보존해 둔다. 또한 증인, 수사 경관, 병원직원의 이름 같은 관련된 사실과 이들로부터 당신이 얻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한다. 커뮤니티 단체로 연락하면 무료로 법률 조언 및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직접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소개 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혐오범죄 관련 교육도 가능하다.

위험노출 1순위, 인권운동가들

세계의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LGBT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의 폭력과 고문, 혐오적인 차별에 맞서 법제도 제/개정하는 활동 등을 벌여 왔다. 하지만, 활동이 다양화되고, 적극적일 수록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공격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각 나라의 인권운동가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이런 위험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짐바브웨의 경우 '짐바브웨 게이, 레즈비언 인권기구' 회원들은 계속적인 친정부 집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브라질의 경우도 Frente Anti-Caus(FAC)라고 자칭하는 신파시트 단체에 의해 1999년 국제사면위원회 브라질 본부 상파울로 사무실에 폭약이 장치되기도 하였다. 2000년 초에는 협박편지를 받았음이 보고되었다.

" 우리는 인권운동가들이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권리의 내용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 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성문제와 구체적으로는 성지향, 그리고 자녀를 가질 권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 2000년 6월 유엔총회 'BEIJING+5'에 있었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 연설 중에서 -

한국의 동성애자 운동의 역사는 짧지만, 팔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의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은 반면 사회인식, 제도면에서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얘기되어 지는 만큼 한국의 인권운동가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동성애자운동의 원년이라고 얘기되어진 95년에 활동한 활동가들은 오픈 된 전화번호로 인해 호모포비아들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불과 얼마 전에도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인해 ‘안티 동성애자모임도 있다. 토막 내 죽이겠다. 없어져버려야 한다’ 등의 욕설을 들어야 했고, 레즈비언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노골적인 성적농담을 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물론 개개인의 안 좋은 경험으로 취급해버릴 수도 있지만, 오픈 된 활동 - 주소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음 - 을 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대응과 자구책, 공론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code 4. 노동권

홍석천 — 아웃팅과 커밍아웃 그리고 부당해고까지

지난 2000년 9월 연예인 홍석천씨는 스포츠 신문 기자에 의한 아웃팅 직후 커밍아웃을 하게 된다.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홍석천씨는 바로 몇 시간 뒤 출연 중이던 라디오 시트콤과 아동프로 ‘뽀뽀뽀’에서 바로 해고당했다. 홍석천씨는 ‘뽀뽀뽀’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도 말이다. 또한 그 전에 섭외됐던 모든 프로그램과도 연락이 바로 끊어졌다. 본인과 의사 확인도, 논의의 시간도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퇴출이었다.

노동자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

홍석천씨 사례가 보여주듯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¹⁹⁾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19) 이 글에서는, 성정체성에 기반하여 성소수자라 칭할 수 있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외에 HIV/AIDS 감염인을 성소수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AIDS가 성정체성에 기반한 질병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AIDS를 바라봄에 있어 동성애정체성과 연결시켜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하는 것이 현실이며, 감염인과 환자들은 이러한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성애자 운동이 HIV/AIDS감염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다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가 자신의 생계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듯 많은 성소수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을 통해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소수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다. 이것은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동성애자들이 세상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암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들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소수자들이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차별받는 것에 대해 보호해주는 법제도도 한국사회에는 없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의 노동권과 관련해 알려진 피해사례 및 법적 소송 사례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특히 일부의 사례이지만 성소수자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차별 양상과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해 보려 한다.

사례 1) 생존 위협과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한 괴한으로부터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갚춰하기 위한 협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S사에 종사하고 있는 B씨는 협박범이 회사에 아웃팅을 해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졌다. B씨는 자신이 아웃팅(Outing 성정체성 폭로)되고 나서 직장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더러운 물건 대하는 느낌이었다”.

성소수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주변 동료들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이 중 거의 62%가

직장에서 이성애자로 가장하면서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²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성애만이 숭고하고 정상적인 것이고 ‘동성애는 변태’라는 시각으로 교육되어지고 방송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 동성애인터넷매체 이반씨티에서 한 설문조사 중 ‘커밍아웃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57%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조장하는 사람들의 편견은 결국 동성애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것이다.

사례2) 성정체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해고 - 생존위협

모 이동통신 회사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레즈비언 C씨는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이유 없이 전근발령이 내려졌고 C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새로운 발령지로 이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이미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소문이 난 상태였고 주변 동료들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결국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C씨의 경우 아웃팅되면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자진퇴사 명령을 받았다. 동성애자는 똑같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성정체성 때문에 해고라는 생존권 위협을 받는다. 영국의 경우 지난 해 토니블레어 총리가 기독교계 기업에서 동성애자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파장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은 성정체성으로 인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악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A씨와 같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났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직을 시켜 그 회사에 도저히 다닐 수 없게 만든다거나 스스로 그만두도록 회유와 협박을 한다. 특히 한국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냉대가 서구에 비해 더 팽배

20) Woods,j(1993) The corporate closet.: The professional lives of gay men in America.New York : Free Press

하다보니 성소수자 자신이 먼저 다른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회사로부터의 압력을 생각하여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렵게 되고 결국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절망감은 더 끌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당해고에 무방비로 동성애자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성애자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이 사회에서 공론화되어 사람들의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인텔, 넷스케이프, 유나이트 항공사, 제록스 등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고, 동성애자 파트너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며,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동성애자들을 대우하는 회사들이 있다.

또한 성 지향에 의한 부당해고와 같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전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현실에서 존재하긴 하지만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주들이 있다. 그곳에서 동성애자들은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나 코네티컷, 하와이,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동성애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경제전문 잡지 [포춘]지에서 지명한 500대 회사의 75%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다.

사례 3) 성소수자가 직장과 사회에서 받는 현실적 불이익

병원 간호사인 30대 후반의 게이 D씨는 직장에서 고침급에 속하는 숙련 노동자다. 그는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언제나 환자들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이 당연하게 받고 있는 사내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 다른 이성애가족을 꾸리고 있는 동료들은, 상대 배우자수당으로 나오는 3만원과 자녀1인당 나오는 2만원씩을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아플 때 연월차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파트너 수당을 받지도 못할 뿐

만 아니라 파트너가 사고로 다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연월차를 받을 수도 없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동거동락 하며 노모를 모시고 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평범한 노동자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하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은, 그나마 이성애자들에게 부여되는 쥐꼬리만한 복지혜택마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하늘만큼 높아 대출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남 혹은 독신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이나 조세 감면, 세금과 사회 안전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많은 기업에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 점차적으로 여러 기업이 동성애자 파트너에게도 이성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 마이크로 소프트, 디즈니,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성애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뉴욕, 버몬트, 오리건 주에서는 동성애자 공무원들에게도 이성애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고정된 남여의 성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폐쇄적인 결혼의 구조 안에서 자연스레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자비를 들여 양육하게 하는 이성애 가족중심의 사회에서는 여타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들을 기존의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비난한다. 그 덕분에 성소수자들은 어떠한 사회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더 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구조가 팽배하여 더 어려운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활동과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회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조건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성정체성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권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성애자들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회복지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4) 성정체성으로 인한 국가로부터의 법제도적 차별

지난 2001년 1월 소방관 편모씨는 동료와 동성애관계를 맺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2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방관 편모씨는 행정법원에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동료와 함께 쉬는 날 극장에 가거나 술에 취해 키스한 것은 장난일 수 있으므로 동성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의 판결은 만일 편모씨가 근거가 충분한 동성애자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적으로 동성애자라면 해고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한국에는 없다. 그러나 이 판결문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법제도 속에서는 아예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욱 억압이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953년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동성애자를 성도착자로 규정, 공무원이 동성애자일 경우 해고시킨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거의 1년 동안 월평균 4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해고되었다. 또한 1977년 동성애적 생활양식의 소유자는 해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미연방법원이 판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후 20여 년간 몇몇 주 단위별로 성적 지향에 의한 고용 차별의 금지법들이 만들어졌다. 그것의 한 영향으로 최근 2000년도에는 미국의 보이스카웃 보조단장 Dale이 부당 해임된 것에 대해 미연방법원은 공공업무에서 성지향성을 근거로 한 그 주의 차별금지법에 위배됨을 근거로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은 법제도적으로 동성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다. 이는 국가가 원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요소가 된다. 또한 이는 동성애자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용화되게 하기보다는 서로 협등과 분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생각들을 더 부추기게끔 한다.

사례5)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 트랜스 젠더(transgendered pearson)

하리수씨가 성전환수술을 하고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트랜스 젠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존재들에 대해 조금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트랜스 젠더에 대해 잘 모른다. 트랜스 젠더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과 반대의 성을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더 자세히는 ‘트랜스 젠더 상담’부분 참조) 그래서 트랜스 젠더의 경우 자기 자신의 신체적 성과 반대의 외모로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 트랜스 젠더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차별은 좀 더 심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외모에 있어서 차별이 심한 나라의 경우 고용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랜스 젠더들이 생계를 위해 찾게 되는 것이 대부분 유흥업이나 운전기사 등에 많이 종사한다. 또한 성전환자들도 어렵게 수술을 하였어도 주민 등록 앞자리 때문에 언제나 고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사례6)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 HIV/AIDS 감염인들

HIV감염인과 AIDS환자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엄청난 약값 때문에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돈을 치료비로만 지출한다. 하지만 감염인임을 알고 써주는 직장은 아마 한군데도 없을 것이다. 에이즈는 이 사회에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을 암시하는 낙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에이즈 검사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검진 과정이 부당해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지난봄에 직장 건강 검진에서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C씨는 직장 상사가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 아직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고 건강한 상태였으나 그 이후 C씨는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다. 업무가 특수해서 바로 교체되기 어려우므로 약 1개월 간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인사과로 넘어가서 전혀 일해보지 않은 부서에서 3개월을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견직으로 다시 인사과를 갔다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원래 업무를 보다 출산휴가 갔던 동료가 돌아와 다시 대기 발령 상태

가 되었다. 결국 회사의 권고와 최종적으로 상사가 그만두라는 통보까지 해명에 퇴직으로 처리가 되었다.²¹⁾

이와 같이 양성으로 판명 날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해고 또는 자진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해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퇴사는 본인의 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에서 HIV/AIDS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이들의 부당해고와 퇴사로 이어져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염인과 환자들은 아예 노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침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어떤 구제조치 및 보호를 위한 법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숨기면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직장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 또는 트랜스 젠더나 감염인들과 같이 원천적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하여 생계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단순히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한 피해라고 치부되어질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이 성애중심적인 가족제도만이 정상으로 치부되게끔 구조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차가운 냉대와 노동권을 차별받는 것은 비단 성소수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 미혼모, 한 부모 가정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도 이와 같은 억압과 차별을 받는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 성애자 노동자들이 성소수자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함께 연대하며 이 문제를 이성애자 노동자들이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노동권문제를 직장 내에서 함께 방어해주며 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소수자의 노동권 문제는 단순히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차원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평범한 이성애자 노동자들이 겪듯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분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성소수자들의 노동권문제

21)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상담사례

는 성지향성의 차이가 있는 평범한 인간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들 또한 정당하고 평등한 대우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지와 방어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앞에 사례 3)으로 나왔었던 병원간호사인 게이 D씨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면서 가족과 친구들, 몇몇 친한 직장 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처음엔 주변 동료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했지만 D씨의 커밍아웃과 파트너와의 결합을 기쁘게 축하해주는 주변 동료들을 보면서 D씨는 자기 자신을 되찾고 스스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수간호사가 이것을 전해 듣고 자신의 개인적 종교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동성애자임이 이후 직장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부에 보고할 것을 D씨에게 이야기 했다. 그러나 D씨는 개인의 성지향성이 회사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과 성지향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부에 보고하는 행위가 ‘아웃팅’임을 떳떳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같은 부서의 직장 동료들은 D씨의 성지향성을 상부에 보고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고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수간호사에게 강경하게 밝혔다. 이러한 주변 조합원들의 방어와 지지는 결국 병원측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성소수자들의 노동권은 한국사회에서 평등권과 생존권으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이성애자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문제로 이해하며 함께 방어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성애자들은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들의 레인보우깃발을 들고 연대하기 위해 나갔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그 당시 자신들의 노동권 문제로 싸우고 있던 이성애자 노동자들의 대열 속에서 동성애자깃발은 많은 지지와 관심 속에서 함께 편견을 깨뜨려버리는 계기가 되었었다.

결론 및 상담센터에게 드리는 제언

언제나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묘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 노동권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든 문제이다. 설사 세상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에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함께 상담해 줄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여러 노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해주는 곳은 이 사회에 아주 많다. 그러나 문제는 성소수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아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드러낼 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성소수자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상담센터에서는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일반 노동권문제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각 성소수자들의 노동권 차별 문제는 먼저 성정체성의 다양함이 인정되고 이 사회의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성소수자 그룹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성소수자 정책을 내놓거나 작업장 내의 차별과 해고 등에 맞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노동조합에서의 움직임까지는 없지만 최근 민주노동당내 성소수자 위원회(준)이 발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성애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상담센터의 활동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노동권 차별 현실 문제가 사회의 여러 단위들과 함께 공유되어 성소수자들이 진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일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지향성의 차이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code 5. HIV/AIDS

에이즈라는 질병은 80년대 초 이 세상에 나타난 뒤로 줄곧 문란한 성생활이나 타락한 성애의 결과로 걸리는 천벌처럼 여겨져 왔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는 한번 걸리면 죽음으로 직행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공포심도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이러한 공포감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맞물려서, 항상 에이즈에 대해 더욱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다. 에이즈는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병자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감염인과 환자들은 자신의 병명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면에서 에이즈는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임과 동시에, 사회의 차별과 억압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상담센터는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인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외에도, HIV/AIDS감염인들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에이즈가 성정체성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에이즈'라는 시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지금껏 수많은 동성애자단체들이 에이즈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는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동성애자 차별과 연결시켜 정면돌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담센터의 에이즈상담은 이러한 에이즈문제에 대한 접근과 맞닿은 곳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에이즈 바로알기

1. 에이즈, 어떤 질병인가?

1) 에이즈란?

에이즈(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영어 약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이즈 원인 병원체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과 에이즈 발병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HIV에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치료제의 발전으로 이제 HIV 당뇨 등의 만성질환처럼 관리를 잘 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HIV감염인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기회감염에 노출되어 발병하면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말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말해져야 한다.

2) 감염경로

에이즈는 전염병이다. 하지만 다른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만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HIV는 공기중이나 수중에서는 금방 활동성을 상실하는 약한 바이러스로 공기감염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안전하지 않은 질 삽입 성교 및 항문 삽입 성교 또는 정맥주사 약물 투여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등을 통해 HIV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 정액, 질분비액이 한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HIV도 전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교시 콘돔사용이나 주사바늘을 돌려 쓰지 않는 등의 기본적 예방조치만 한다면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인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다. 병 자체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는 의학적 사실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 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근거없는 비난이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에게 가해지고 이들을 병자가 아닌 도덕적 타락자란 사회적 낙인을 덧씌우게 된다.

2. 에이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에이즈를 둘러싼 많은 상식(?)들은 근거가 없거나 극단적 혐오로부터 기인한 게 많다. 도덕적 타락의 천형이라든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든가하는 온갖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아 다닌다. 하지만 무엇 하나 사실에 바탕한 것들은 없어 보인다. 또한 이것이 에이즈가 단지 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왔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에이즈가 얼마나 왜곡된 외피에 파묻혀 있는지 우리는 통찰력 있게 째뚫어 봐야 한다.

3.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질병인가?

많은 이성애자들은 에이즈를 동성애자들의 질병쯤으로 치부하여 자신들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에이즈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하지 않는 전염병이며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선 주로 이성애자들의 질병이다. HIV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서는 전혀 감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상담을 청해 오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랑 관계를 가졌는데 에이즈에 걸리는 게 아니냐고 묻곤 한다.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4. 에이즈는 성적문란함과 타락의 결과로 걸리는 질병인가?

에이즈에 대한 가장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지식은 에이즈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는 것이다. 이성애 도덕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동성애, 성적 문란 등은 배척되고 비난 받아왔다. 그래서 동성애자나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에게 당연히 타락의 천형인 에이즈가 전파된다고 믿는 것이다. 에이즈는 마술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원인이 있고 그결과로 감염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개인의 침실에서의 일들은 누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의 성적 문란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5. 에이즈 공포(포비아)는 누가, 왜 만들어내는가?

에이즈만큼 많은 이들에게 일상적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흔치 않다. 에이즈에 대

한 혐오와 공포는 에이즈 발견 당시 상상을 초월했다. 에이즈란 위기에 봉착해서 레이건 미국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의 무대책을 상쇄하려고 했다. 유례없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급증했고 에이즈는 신의 형벌로 간주되었다. 이후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연구로 이제 많은 부분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에이즈포비아는 내적, 외적 포비아 둘다 문제시되고 있다. 내적 포비아의 극단적 형태로 자신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 자살에 이른 사건이라든지 잠적한 HIV 감염인에 대한 수배 조치를 기억해 낸다면 우리사회의 편견에 휩싸인 에이즈포비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6. 에이즈가 확산되는 진정한 원인은?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약 4500만명, 한 해에 5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로 2천만 명이 사망하였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전체는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 중 70%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100명의 신생아 가운데 9명이 에이즈 환자라 한다. 남아공의 경우 전체 국민의 26.5%가 에이즈 환자로 매일 15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6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와 중국 또한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이즈 환자 가운데 80% 이상이 치료는커녕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천 8백만 명의 남반구 환자들 중에 0.09%, 즉 약 2만 7천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제3세계 HIV 양성 보균자 14명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치료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과 이로 인한 사망이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에이즈가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보다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거대 제약 회사와 각국 정부들 때문이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화이자, 바이엘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값싼 에이즈 약을 대량 복제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을 “해적”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걸고 특허권이 있는 약품-에이즈와 그 합병증을 치료할 모든 약-생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정부, 유럽 선진국정부들, 일본 정부가

WTO의 이윤지상주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미국정부는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감싼 약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나라들-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포함한 30개국-에 무역제재를 가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에이즈 위기를 확산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하는 내핍정책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한국의 보건시설이 상당수 붕괴했다. 미얀마, 베트남, 중국에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IMF가 강요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부채상환은 1990년대 내내 아프리카에서 7백억 파운드(약 126조원)을 빨아먹었다. 이 돈의 일부만으로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을 구할 수 있다.

에이즈 감염인들과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이것을 치료할 약이 개발되지 못해서도 아니다. 바로 이들이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할 정도의 빈곤을 강요하는 이 사회의 이윤지상주의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약이 공급되어지고 기아와 빈곤을 부추기는 거대 제약 회사들과 각국 정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행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에이즈와 성소수자 상담

1. 동성애 커뮤니티의 에이즈 인식

동성애 온라인 커뮤니티(이반시티) 게시판의 에이즈 관련글들은 에이즈란 병 자체에 대한 극심한 포비아를 보여준다. 자신이 감염되지 않았을까란 두려움, 공포, 심지어는 거의 패닉 상태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보이는 심한 증상을 보이는 글이 있었다. 또한 에이즈에 관한 무지와 오해로 그리고 사회의 악의적인 호도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 간의 성행위가 에이즈로 바로 연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의학적 상식까지 꽤나 풍부하게 제시해주는 답변을 달고 있었다. 동성애 커뮤니티의 성지식이 어쨌든 일반적인 수준보다 앞서 있다는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동성애 커뮤니티가 에이즈에 대해 민감하고 또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한 섹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는 반증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성적 문란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금욕을 주장하거나, 이는 쪽질방, 원나잇 등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섹스 문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섹스 와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언론 등에서 유포하는 동성애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편견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이는 에이즈의 문제를 동성애자의 도덕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다행인 것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포비아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인들에 대한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염이 바로 자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감염된 애인에 대해서도 애인을 잘 보살펴 주라던가 두 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우호적이고 사려 깊은 위로와 격려의 글을 달고 있었다. 성소수자 상담센터는 이러한 동성애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이 안에서 동성애자 감염인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보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 커뮤니티 내의 이러한 장점을 살리되, 여전히 존재하는 도덕적 죄책감과 에이즈포비아를 완화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감염인의 섹스 할 권리

감염인들도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의적인 책임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감염인이 섹스를 하는 것이 자신의 병을 전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감염인의 섹스 할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감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감염인이나 환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감염되지 않도록 콘돔을 착용한다면 성생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섹스는 어쨌거나 기쁨과 만족을 위한 행위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섹스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경험인 것이다. 감염인들은 이미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질병과 힘겹게 싸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와의 섹스는 치유와 위안일 수도 있다. 감염인의 섹스가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터부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편견에 사로잡

힌 이 사회의 뜻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무시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일상 속에서도 옹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감염사실 확인과 치료

감염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12주 정도 지나서 검사를 통해 감염 확인을 받은 후, 그 양상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는다면 현재에도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치료의 최적기는 면역지수에 의해서 계산된다. 일정한 면역지수에 도달하면 전문의가 치료제 복용을 권고한다. 중요한 것은 면역지수를 정상치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가능한 것이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감염 초기에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면역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에이즈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꾸준한 치료와 감염인 및 환자 스스로의 건강관리가 함께 병행한다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에이즈는 난치병으로서 완치제가 없지만,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참고]

4. 정부지원과 감염인의 현실

에이즈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로 보험자 부담 분 이외의 본인 부담분만 정부에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국의 감염인 상황을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자들은 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약값을 구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체가 어렵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매달 30만원 이하의 돈을 정부로부터 받지만, 50만원 정도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벅찰 뿐이다. 비록 후불제로 나중에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애초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조차 먹지 말라는 뜻과 같다.

MRI나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보험조차 되지 않아 검사받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병원마다 보증금 제도가 있어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에이즈 병동이 없는 경우, 1인실 또는 2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보다 입원비용이 더 많이 든다. 물론 에이즈환자들은 다른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일반병실에 입원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회질환으로 입원하는데, 기회질환의 경우 본인책임으로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들은 의약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지방 환자들의 경우는 더 심하다. 광주/전남지방에는 약이 한 종류만 비치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약을 구하려면 환자들은 서울까지 매번 와야 하고, 이들은 생계도 꾸려나가야 하기에, 어느새 몸관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빈곤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겨우 약 값 뿐이다. 현재 한국의 에이즈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만약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약값지원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삭감하기 위해 애쓴다.

한국사회에서 감염인과 환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들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시민사회단체에서조차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감염인 및 환자들을 만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감에 있어 위에 언급한 감염인의 현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성소수자 상담센터가 감염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면역지수를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단지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는 곳이라면, 대다수의 감염인들에게 일정 이상의 도움이 되기는 힘들다. 상담센터에는 바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 또한 필요하다.

성소수자 상담센터는 에이즈 상담에 있어, 기존의 에이즈 상담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지금 에이즈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 몇몇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에이즈 상식에 대한 상담과 예방, 치료, 관리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곳들은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에이즈관련 정책이 다수의 빈곤한 감염인과 환자들을 소외시키고, 이를 보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접근은 지금껏 시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에이즈상담연구기관에서는 동성애자를 고위험군으로 분

류하는 등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방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에이즈 문제와 상담에 대해 좀 더 다른 접근이 요구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성소수자 상담센터는 단지 에이즈에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나, 에이즈에 걸려 고통 받는 환자와 감염인들을 위로하고, 치료를 위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감염인 인권과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는 곳으로 가꾸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code 6. 청소년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7조 심의기준에 언급된 동성애 관련 조항을 기억하는가. 이 조항의 근본적 취지는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음란하다고 규정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동성애 관련 커뮤니티와 영화, 서적 등 각종 매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 즉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사회악 - 음란으로서의 동성애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 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 동성애자들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끈질긴 싸움은 결국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동성애' 조항 삭제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은 성보수주의를 강화시켜 사회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정작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객체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법제도를 통한 통제의 주체는 기성세대들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치관으로 기존의 개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그룹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음란, 퇴폐'라는 딱지는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긍정하기란 쉽지 않다.

다중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

사례 1.)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아웃팅 문제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학교인데요. 유난히 선생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키스를 하는 것에 정학처분이 가해지고 복도에서 손을 잡고 다니거나 친구와 조금만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 선생들이 와서 체벌을 하거나 징그럽다고 육을 하고 갑니다. 성교육 선생도 특별히 동성애나 에이즈에 관해 혐오스럽다는 발언을 하고는 해서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차별적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얼마 전에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중 누군가가 선생님에게 제 성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워낙 당황한 터라 대처할 시간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전교에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무실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담임선생님은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 정신과치료와 상담을 받게 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사례 2.)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어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를 비정상적으로 규제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대고 성교육이나 윤리시간도 달라진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학교가 기독교학교인지라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나의 성정체성에 스스로가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하루의 반, 아니 그 이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나를 자꾸만 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 성소수자 집단은 자아실현, 질풍노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청소년 연령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가 부여하는 '독립을 준비하는 자아형성기' 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중의 의미가 만들어내는 청소년 문제는 가출, 가정폭력 등의 가정문제부터 왕따, 체벌 등의 학원폭력, 원조교제, 성폭력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 주변에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문제의 발생 위험군들이 항상 잠재되어있다. 아울러 많은 수의 청소년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전제를 덧붙일 필요가 있겠는데, 학교의 구조- 폭력이 빈번한 선생님과 학생의 수직적 관계, 거대한 사회구조 내의 소규모 집단생활, 사회생활의 자격이 되는 주요과정, 학벌주의를 강요하는 환경 내의 학생집단- 역시 청소

년문제 발생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강요와 제한을 받는 사회의 특정 연령층이라는 성질이 붙으면서 청소년문제는 일정의 특수성을 갖는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 전반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성소수자' 문제는 커밍아웃, 아웃팅, 성정체성문제, 법률문제, 범죄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들에게는 성소수자로서의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체-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적인 보호-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의 대상이 '청소년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 그들의 문제는 '청소년'과 '성소수자'들이 각각 겪고있는 문제의 단순한 '결합' 만으로는 끝나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 가정에 커밍아웃을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 아웃팅을 당해서 학우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받는 경우, 윤리나 교련 교과서에 변함없이 나오는 '에이즈의 주범, 음란한 동성애', 원조교제문제, 극단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성소수자'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과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구조의 결합을 넘어 더욱 위험하고 한층 복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결국 청소년 성소수자문제는 다중의 굴레를 안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인정하는 시기를 일률적으로 청소년기라고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과거 성소수자들과 다르게, 최근 들어 공공영역, 대중매체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감안하고, 사회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²²⁾ 특히 90년대 후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성소수자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통공간이었고, 상대적으로 정보획득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만의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한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정체성에 대한 학교교육과 상담에 있어 여전히 해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나 가르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른다. 물론 교육부에서 2001년 발간한 성교육지침

22) Offer and Boxer, 1991

서에 약간 언급이 되어있기는 하나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은 없다. 아직은 시기상 조로 보고 있는 형편이다²³⁾ 반면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지하는 청소년들은 올바른 교육의 부재와 주변 친구들로부터 접하는 반(反)동성애적 편견, 환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다.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강력히 부정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신체적, 사회심리적으로 불건강하게 만들고²⁴⁾, 심지어 우울과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²⁵⁾

청소년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요성과 한계

앞서 말한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의 성격에 중요한 현상 하나가 덧붙여질 필요가 있겠는데, 이는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가정과 학교라는 소규모적이고 폐쇄적인 집단과 깊이 연루된 청소년 성소수자문제는 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포털 사이트 성격의 사이트를 제외한 온라인 모임만 하더라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청소년 일반 카페인데, - 물론 회원들 모두가 청소년 성소수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 이 부분은 단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목에 의존하려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접근이 용이하고, 익명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결집-비록 온라인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을 보다 빠르고 쉽게 규모화시킬 수 있다. 이를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혼자 고민을 떠안는

23) 정연희(2003),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동성애 현황', 동성애상담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24) Remafedi(1987)에 의하면 부모의 43%, 친구의 41%가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으며, 친구의 언어적 폭력(55%), 신체적공격(30%)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한국청소년상담원 조사에 의하면, 가까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거부하는 행동(말린다, 피한다 등)이 79%로 수용적 행동(16.8%)보다 높아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5) Lee(2000)에 의한 '우울과 자살의 위험요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단절을 경험할 때 성인보다 월등히 자살율이 높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이성애자 청소년(2.2%)에 비해서도 심각한 자살시도율이 9.4%로 4-5배 높다.

것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성정체성 인식의 과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성정체성 확립 시기의 연령대가 많이 내려간 것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인터넷 커뮤니티는 대개 친목적 성격으로 국한된다는 점에 많은 한계에 부딪힌다. 일단 커뮤니티의 목적 자체가 친목에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받는 차별이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까지 접근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인터넷의 확산이 있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아웃팅을 당해 자퇴를 강요받는 상황에 도대체 인터넷 커뮤니티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도움과 행동을 필요로 하는 성소수자 청소년들 스스로 그들 문제의 해결과 도움을 인터넷에서 찾는 것에 한계를 인식하여 일단은 자신들의 고독감, 외로움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친목모임이 증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동질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온라인모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일상(가정이나 학교생활)과 단절되는 경향이 종종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인터넷 매체는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원조교제, 성폭행문제 등은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반시티나 티지넷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상담게시판을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상담은 어떤 특정의 전문적인 상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간에 이뤄지는(한쪽에서 문제를 올리면 리플로 대답해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개는 법률이나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 인간관계나 성생활 등 가벼운 주제의 상담이 이뤄지거나, 설령 무거운 내용을 올리더라도 어떤 해결에 대한 요구보다는 '내 이야기를 풀어 놓을테니 들어 달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된다 - 결정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그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 -. 설령 청소년 성소수자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인터넷 상담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고의 발생- 퇴학, 가출, 자살, 폭력 등의 문제-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문제를 인터넷 커뮤니

티 내에서 다루기엔 성격이 맞지 않을뿐더러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그렇기에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나 기존 상담센터만으로는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보호, 자활을 위한 사회시스템과 보호망이 더욱 절실히 진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의 필요성

그렇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일 것이다. 정부 산하의 청소년상담소나 사설로 운영되는 상담소들이 즐비해 있지만, 실제 내담자의 요청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상담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성소수자문제에 대한 전반지식과 호모포비아적인 사회구조의 인식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혹페려 왔다가 혹 불이고 가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상담에 의뢰했다고 하자. 상담원이 그(녀)에게 성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다면 -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은 한때이니 기다려보라고 주문한다던가, 이성을 만나보라는 식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 내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는 사고- 성폭력, 학원폭력, 자살 등- 의 위험성까지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기본자세로 요구되어 진다. 물론 상담의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상담들)도 있겠지만, 상담원들이 직접 개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간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 내지 담당선생과 만나는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인데, 이들을 만나더라도, ‘성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 ‘걱정 말라’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고, 상담할 상담원 내지 기관이 요구되어 진다.

소결

상담사례만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 성소수자 문제에도 ‘청소년’으로서, ‘성소수자’로서,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상담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변함없는 청소년 보호체계 아래서 같은 내용의 상담만 되풀이되는 순환으로 소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에 상담의 측면만큼이나 청소년 인권보호측면에서도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자아 성장을 위한 프라이드 프로그램이나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생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인권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학교강연 등 좀 더 대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과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아웃팅당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왕따시키는 학교 분위기나 퇴학시키는 학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리플릿 형식의 소식지를 만들어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 배포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출발선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code7. 군대

* 이 글은 성소수자 전문 상담센터 준비 워크샵에서
발제한 내용을 재구성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병역거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호와 증인 신도들의 종교에 따른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에 초점이 맞춰있어 비 여호와 증인들의 병역거부는 그것에 비해 관심 밖으로 치부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 동성애자 2명이 병역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그들의 ‘동성애자로서 병역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양심이 현재 구속사유가 된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군대를 ‘동성애자들이 적응할 수 없는 환경’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곳이자 ‘폭력을 용인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보면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과 차별이 개개인의 안 좋은 기억으로만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차별적인 제도, 환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곳이 없다.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군차별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중요한 근거들이 되지만, 현재 사회 쟁점화되지 못하고, 동성애운동에서조차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나 홀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로 군차별문제에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거부하는 군대

2003년 7월 모든 언론에서 선임병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한 김일병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룬 것을 시작으로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안'을 마련하였는데, '장병들의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성적 이상 성향자나 이상 성격 소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대안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서 성적 이상 성향자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군 성폭력의 가해자로 동성애자를 지목한 것이다. 파이낸셜 뉴스, 스포츠투데이, 국민일보 등 언론의 경우도 성폭력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동성애자들을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매도하며 국방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데 일조하였다. 즉 남성동성애자가 군대와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성욕을 참지 못해 같은 동성을 강간, 성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형법 92조에 명시된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은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위의 국방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계간'이라는 표현은 남성동성애 행위를 일컫는 말로 단 계자를 사용해 행위자체를 동물적 행위로 폄하한 것이다. 또한 강제성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간만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은 곧 남성동성애자를 차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남성 간 강간의 규정도 강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를 군 성폭력의 가해자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2001년 미국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가장 빈번하게 남성 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공식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남성강간을 연구한 마이클 스카스(Michal Scarce)는 남성을 강간, 성폭력하는 남성은 대부분 이성애자라고 결론지었다. 성적욕구, 욕망, 열정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서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 사회에서 성폭행을 하는 남성은 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적

으로 소수자이면서 차별받는 입장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를 가해하는 권력을 관계 속에서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노출되면 될 수록 동성애자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명시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정신과 항목에 의하면 트랜스젠더를 '성주체성장애'로 동성애자를 '성 선호장애'로 규정해 놓고 있다. 2004. 4. 18 한겨레 웨냐면에 '누가 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주장을 실은 병무청 병역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성전환자 또는 동성애자 등은 보통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성적 욕구가 나타나므로 군 기강을 헤이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 수치심 유발 등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며, 동성애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했다.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99항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나. 경도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 다. 중증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라. 고도(정신과 치료의 과거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 생활기록부 및 기타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 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부(병무청)는 공식적으로 동성애자(트랜스섹슈얼)라는 이유만으로 면제시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자신의 성지향으로 인한 또 다른 정신과적인 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법령. 한겨레 웨냐면에 실린 글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국방부는 남성 동성애자를

을 또 다른 성지향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군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비정상적' 집단(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성지향으로 인한 2차 병력 문제를 부차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선호 장애(성주체성 장애)를 인격, 행태장애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법령 그 자체는 '2차적 정신과적 병력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동성애(트랜스섹슈얼)를 정신 병을 분류한 것으로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차별조항이다. 이미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와 미심리학회는 1973년과 1975년에 '동성애는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미정신의학회의 경우 동성애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과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식적 진단메뉴얼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Second Edition(DSM II)을 제작하는데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동성애가 정신장애와 행동장애가 아닌 성행동의 정상적 변형체(normal variant)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1998년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가정(prior assumption)하에 동성애를 여전히 정신장애로 보고 치료하는 전환치료(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y: 동성애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꾸려는 정신과적 치료)를 반대하였다(APA, 1998, 2000).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WHO의 1993년 국제질병분류 ICD-10에 의하면 '성적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 외국의 경우

1992년도까지 NATO회원국 16개국 중 영국과 미국만이 남성 동성애자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99년 9월 영국 남녀 동성애자 3명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 금지판결한 영국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영국정부는 동성애자 군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부터 프랑스군남녀동성애협회를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으며, 회원간 협력, 권리보호, 동성애 혐오에 대한 투쟁을 위해 창설됐다고 설립동기를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성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과는 달리 1997년 클린턴이 언급한 'don't ask! don't tell don't pursue'(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추적하지도 말라)라는 일종의 타협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게이, 레즈비언들의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1999년 7월5일 베리 윈첼(Barry Winchell, 21) 일병 사건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침 중에 동료 병사의 집단 구타에 의해 사망한 사건 -에서도 알 수 있듯 동성애 혐오적인 문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동성애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되어지는 게이, 레즈비언들의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2003년 3월 동성애자들의 군입대 조치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가 미국의 정책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한국은 '주변에 생활하는 동료 중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존재' 자체가 배제되어 있거나 정책과 제도 안에서도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를 거부하는 성소수자

만 19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아니 이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 '가부장성'을 재교육받기 위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되어 있다. 2년간의 재교육의 성과는 사회에 나와서도 모험담의 중요한 한 꼭지로 이어진다. 군대가 누구에게나 두려운 곳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특히 성소수자들에게는 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성애 중심적이거나 동성애혐오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인한 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응해야 함은 때때로 개개인들에게 끔찍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 초반 군 입대를 앞둔 남성동성애자들이 갖는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때로 화장을 하고 신체검사장에 등장하는 쇼킹한 수법을 쓰는 이는 있다. 큰 맘(?) 먹고, 군대를 가는 경우에도 '면제, 전역'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군의관 내지 간부들에게 말을 하거나 - 대개 처음에는 전역에 대한 생각보다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기대는 말함과 동시에 깨진다.

- 타의에 의해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군정신 병원에 격리되던가(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내무반을 같이 사용하는 다른 사병들과 전혀 원만한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개인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많은 남성동성애자들은 지인, 홈페이지, 단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고 상황이다.

- 차별의 실례

[사례1]

저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이등병이죠.. 저도 군대란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라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내가 동성애자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대하고서 부터 저는 더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하루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강압적인 말투. 나의 행동 하나 하나에 따가운 시선들.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원 없이 싫기도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휘관님들한테 내가 동성애자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지휘관님께서 비밀지 켜 주신다고 그렇게 당연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전우들한테까지. 따가운시선 수근거림.... 도저히... 내가 동성애자란 이유만으로 국군 소속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께서도 내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동성애자란 이유로 한달을 넘게 쇠창살 속에서 창밖 헛빛이 그리울 만큼..., 전역하고 싶어 군의관님께 예기를 드렸더니.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일을... 저는 어쩔수 없이 다시 감옥소와 같은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너무 싫습니다.. 저 어쩌면 좋죠? 더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겨우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친구사이를 찾아가 상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느닷없이 이런 저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2004. 7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상담사례)

[사례2]

난 이등병 시절, 편지가 공개되는 것을 계기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군창동병원 정신과 병동에 1개월 반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 후송되던 날, 안경을 뺏기고, 옷을 벗은 채 '호모가 왔다'라는 식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또한 3일간 독방에 격리되어 생활했다. 이후 격리가 끝나도 낮과 밤의 나의 생활은 다른 입실자들과 달랐다. 낮에는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밤에는 나홀로 독방에서 자야했다.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매일 먹고, 강제적으로 hiv 검사도 받았다. 나를 위한 치료는 '맘에 드는 간호장교 없냐, 제대하고 싶으면 누구한 명 건드려라'라는 식의 말 뿐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께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병원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병제대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관을 그대로 군의관에게 전달했고, 그 후 자대복귀 판정이 났다. 그렇다고 자대복귀 후 원만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병원까지 갔다 온 사람인지라, 관심사 병 1호에 경계근무에서도 제외시킬려고 하였다. 가까스로 만기제대를 하였지만, 복귀 후 나의 생활은 불안, 초조의 연속이었다. 누군가의 수군거림에 웬지 불안하고 내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은 연일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999. 1 필자의 경험)

차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병동에 격리시키고, 이후 자신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게 가족에게 성정체성이 알린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경우 전역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복귀판정이 내려져 남은 군 생활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폭력에도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성폭력의 가해자, 정신병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개인의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혀졌을 때 겪는 억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가시적인 억압과 차별은 최근 '병역거부자'들의 반대행동으로 조금씩 이슈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군차별 문제를 대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시급히 모아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와 군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군면제 받고 싶어하는 성소수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와 성소수자들이 군대에서 거부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꾸준하게 연결지어 고민해야 한다.

개입

군입대전이나 후 당사자가 면제, 전역을 요하는 경우는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도 나와 있듯 '자신이 게이/트랜스젠더'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주변사람들의 인우보증서,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성정체성으로 인한 제2차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음을 구두, 정신과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군정신과전문의는 당사자의 최종 전역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긍정한 경우에는 면제 및 전역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례1,2>와 같이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 군 생활 자체를 어렵게 하는 수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커밍아웃하거나 아웃팅 당한 성소수자 군인을 보호해 줄 시스템 내지 구제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단지 군 정신병동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체복무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에서는 '침묵'만이 최대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기 마련이다. 예로 <사례1,2>의 경우처럼 군입대 후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져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담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해 지원해야 함은 물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보호조치에도 앞장서야 한다.

#code 8. 트랜스젠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가 얘기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게이와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 못한 채 혼용해서 사용했고 심지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게이들조차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홍석천씨의 아웃팅 사건과 트랜스젠더를 전면에 내걸고 나온 연예인 하리수씨의 출현으로 한국 사회는 갑작스럽게 게이와 트랜스젠더를 구분하게 되었다. 물론 상당 부분 보여지는 것에 의한 피상적 구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트랜스젠더라는 존재에 대한 한국社会의 인식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는 왔지만 그것은 연예인 하리수씨의 이미지가 들어온 것이지 정확한 트랜스젠더의 일반적 실재가 들어온 것이라 볼 순 없다.

성공해서 유명해진 하리수씨와는 다르게 이 사회의 차별적인 시각과 알 수 없는 혐오감 등으로 고통받고 상처받는 많은 평범한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마도 성소수자 상담센터의 주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글이 한국의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상황의 열악함은 동성애자인권여대의 상담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 상담 전화를 거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그래서 상담사례 중에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사례는 유독 손에 꼽을 정도이다. 더욱 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트랜스젠더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하리수씨를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이 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지칭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듯하다.

트랜스젠더는 광범위한 '젠더의 표현'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드래 퀸(drag queen)과 드래 (drag king), 바이젠더(bigenders),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s), 트랜스젠더리스트(transgenderists), 그리고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s)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으로 파악되는 성(sex)과는 달리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다. 즉 젠더는 사회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고 이해하면서 출생시 지정된 성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람의 외모, 인격적 속성 및 사회성적 역할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자신의 해부학적 성과 모순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태고난 자신의 육체의 성과, 정신의 성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육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육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인의 성 정체성의 혼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리수씨는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이면서 이성애자이다. 이와는 달리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이면서 여성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트랜스젠더라고해서 모두 다 하리수씨처럼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위치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겹겹이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 할 만큼 달라지긴 했지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감은 여전하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이다. 이들은 또한 다른 성소수자 - 주되게는 동성애자 - 와 달리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성소수자들로부터도 냉대를 겪는다.

사회의 냉대와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은 주눅이 들어있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으로 고통 받는다.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힘겹다. 하리수씨가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하고 방송에도 자주 출현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에게 하리수씨는 선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에서 얘기되어지는 트랜스젠더의 범주에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는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은 사회가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성 개념과 자신의 존재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들을 얹매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 조건과 구체적 차별의 현실들은 가혹할 정도이다. 다른 성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도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부터 사회로부터의 배제, 소외감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겪는다.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문제들

트랜스젠더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일반인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가외의 위기이다. 부족한 자료지만 실제 상담사례와 온라인상의 상담 자료들을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1) 정체성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자신을 인정하는데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른다. 이성애 중심적 사회에서 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성애자나 자신의 성을 거부하는 트랜스젠더들은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다. 이들은 이성애 중심적 교육과 주변의 근거없는 차별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상황에 혼란을 느끼고 남들과 다른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

학적 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 극단적 혐오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게다가 트랜스젠더는 다른 성소수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더욱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른 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술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가족 간의 관계 등의 전반적 문제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온라인상의 트랜스젠더 사이트를 살펴보면 호르몬제에 대한 질문, 반대 성을 획득하기 위한 수술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기까지의 두려움에 대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

2) 호적정정

트랜스젠더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찾는 일일 것이다. 그러려면 호적정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도 트랜스젠더에겐 자신의 선택에 의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호적정정을 신청했지만 대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유는 법원이 성염색체에 의한 성별구분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성염색체로 성별이 결정되고 난 이후의 심리적, 물리적 변화만으로는 법적 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트랜스젠더의 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결정이다.

하지만 개별 법원의 판단으로 호적정정을 인정받은 사례들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고종주 판사의 호적 정정 허가 사례를 포함해 2001년 이후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 정정된 사례가 9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례가 27건에 이른다. 물론 성별 변경에 관한 확립된 판결 기준이 마련된 게 아니라서 개별 판사들의 재량에 의한 판결일 뿐이다. 이미 2002년 11월에 성정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트랜스젠더들은 호적정정이 되지 않아서 활동범위를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훼손당하고 있음에도 법원이나 국회가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

하거나 등한시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호적 정정이 불가능한 현실은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3) 취업

두 번째로 언급한 호적정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에 심각한 것은 취업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다른 이들처럼 회사에 취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트랜스젠더의 존재자체를 거부하는 사회가 이들의 일상적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직장에 취직하려고 시도해도 그들의 외모와 주민등록상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그리고 혹여 직장에 취직했더라도 자신의 열악한 처지 때문에 불평등한 조건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편견이 없다면 트랜스젠더로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편견이 가득한 현실에서는 male to female들은 보통 바(bar)나 클럽 등의 유홍업소에 취직하게 되고 female to male은 혼자 일할 수 있는 운전직 등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취직도 쉽지는 않다. 클럽 등에서는 업소 측에 채무관계로 묶이게 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도 적은 임금과 구타, 감금, 폭행 등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female to male은 신호 위반 등의 가벼운 사건에서도 경찰들의 불합리한 대우와 모욕적인 시선을 감내해야만 한다.

4) 성폭력, 성추행

트랜스젠더는 성폭력과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은 이것을 거들고 있다. 한국 현행법상의 강간죄의 객체의 부녀 판정기준은 트랜스젠더로서의 존재와 법적 현실간의 가장 어처구니없는 블랙코미디이다. 1996년의 트랜스젠더 강간 사건은 결국 법원이 트랜스젠더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를 무죄 방면시켰다. 여기서도 부녀 판정의 기준은 성염색체였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여성

의 외부성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사회통념상 여성이 아니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웃지 못 할 판결이다. 이런 판결은 트랜스젠더를 법적 사각지대로 내몰아 강간을 부추기고 있는 꼴에 다름 아니다.

5) male to female의 병역문제

호적상 남성이며 여성으로 성전환한 male to female들은 호적상 남성이기 때문에 병역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술을 한 경우는 6급 면제 판정을 받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male to female들은 수술을 감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또는 집안에서 군대를 갔다와야 제정신이 들거라며 직접 입영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male to female들은 무작정 가출하는 등의 시도를하게 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다고 하지만 수술하지 못한 혹은 수술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male to female들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일률적으로 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인권 침해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 법안에서도 성별변경의 기준으로 수술을 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법이 제정 된다 해도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게 뻔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트랜스젠더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트랜스젠더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혐오가 만들어 내는 문제들이다. 이들을 차별하는 현실은 단지 시선이나 혀를 차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리적 폭행이 수반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실제로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 불려갔던 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조서가 작성되고 피해자에서加害者로 뒤바뀌는 상황에 처해졌다. 많은 경우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혼자 피해를 고스란히 견디려 한다. 강간의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는 것처럼 트랜스젠더도 똑같은

굴레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의 법은 이들에게 더 곤란함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이들이 필요한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기껏해야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선배들로부터 상황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성소수자의 문제들처럼 트랜스젠더의 문제도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실의 모순점을 밝히는 것은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작이다.

성소수자 전문 상담센터의 활동은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법적, 사회적 평등을 가져오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담센터는 현실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만큼 자료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트랜스젠더의 구체적 현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전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